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교육

믿을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신뢰사회의 기본입니다.

Privacy by Trust, Trust by Privacy

Contents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II 개인정보 분쟁조정사례 및 오남용 사례

III 공공부문 주요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Contents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 1.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개요
-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1.3. 법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고려사항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개요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방향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Overview

데이터 경제 성장 견인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을 통한 산업 전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신설
-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를 통한 불합리한 규제 정비 (동일 행위 동일 규범 적용)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축

- 분쟁조정 제도 개선, 사적목적 이용금지 등 보호체계 개선
-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 인공지능(AI) 기술 가속화로 인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신설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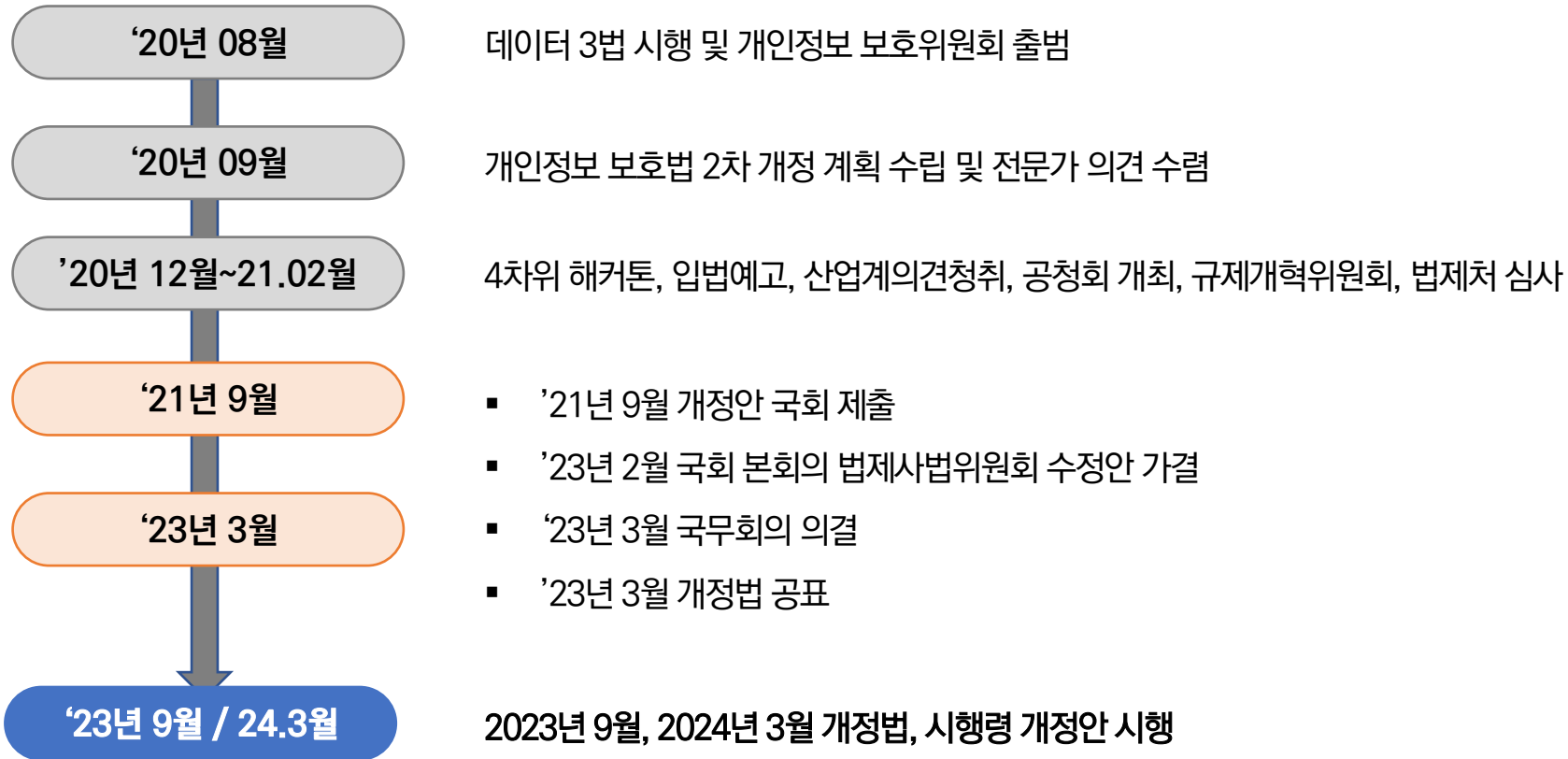
- 국외이전 요건의 다양화
- 이전 중지명령권 신설을 통한 안전조치 강화
- 형벌 중심의 제재에서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을 통한 보호·예방의 실효성 확보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개요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추진경과

▶ '20년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추진경과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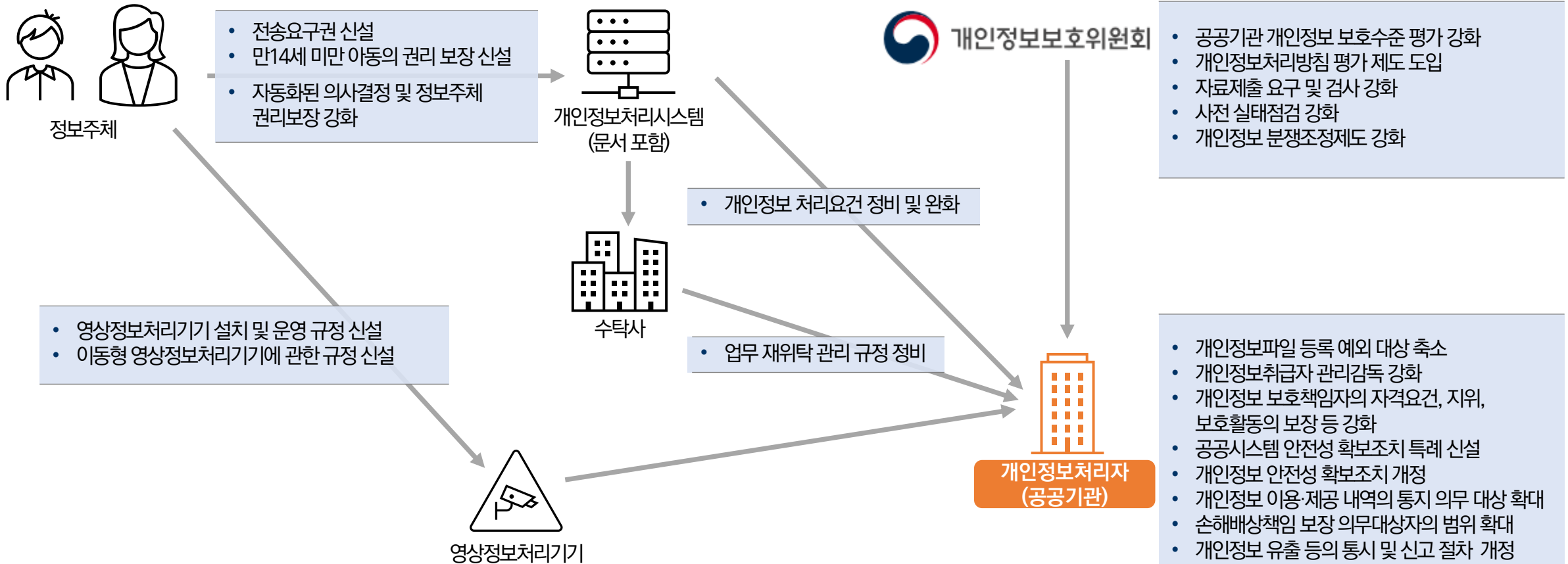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요약

No	개정사항	유관조항	
1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2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 및 완화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3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공공기관의 보호활동 강화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4		업무 재위탁 관리 규정 정비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5		개인정보취급자의 관리감독 강화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59조(금지행위)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위 기준 강화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7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등
8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	제2조(정의),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9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강화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정보주체 권리 신설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10		만14세 미만 아동의 권리 신설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11		개인정보처리방침 고지사항 추가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12		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통지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13	온·오프라인 규제의 일원화	제39조의3(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통합 또는 삭제	
14	가명정보 처리 제도 개선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15	분쟁조정 제도 강화	제45조(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제47조(분쟁의 조정), 제50조의2(개선건의의 통보)	
16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17	과징금 제도 정비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개요

🔒 개인정보 보호법 이해관계자와 주요 개정 내용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강화

시행 : 24년 3월 15일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2항에 근거하던 공공기관 관리수준에 대한 법적 근거의 명확화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 법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조항 신설
- 평가 기준과 방법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권고와 권고에 대한 개선조치 요구 등 보다 강화된 개선요구 근거 마련

✓ 평가의 기준·방법·절차 및 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에 대한 시행령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기준·방법·절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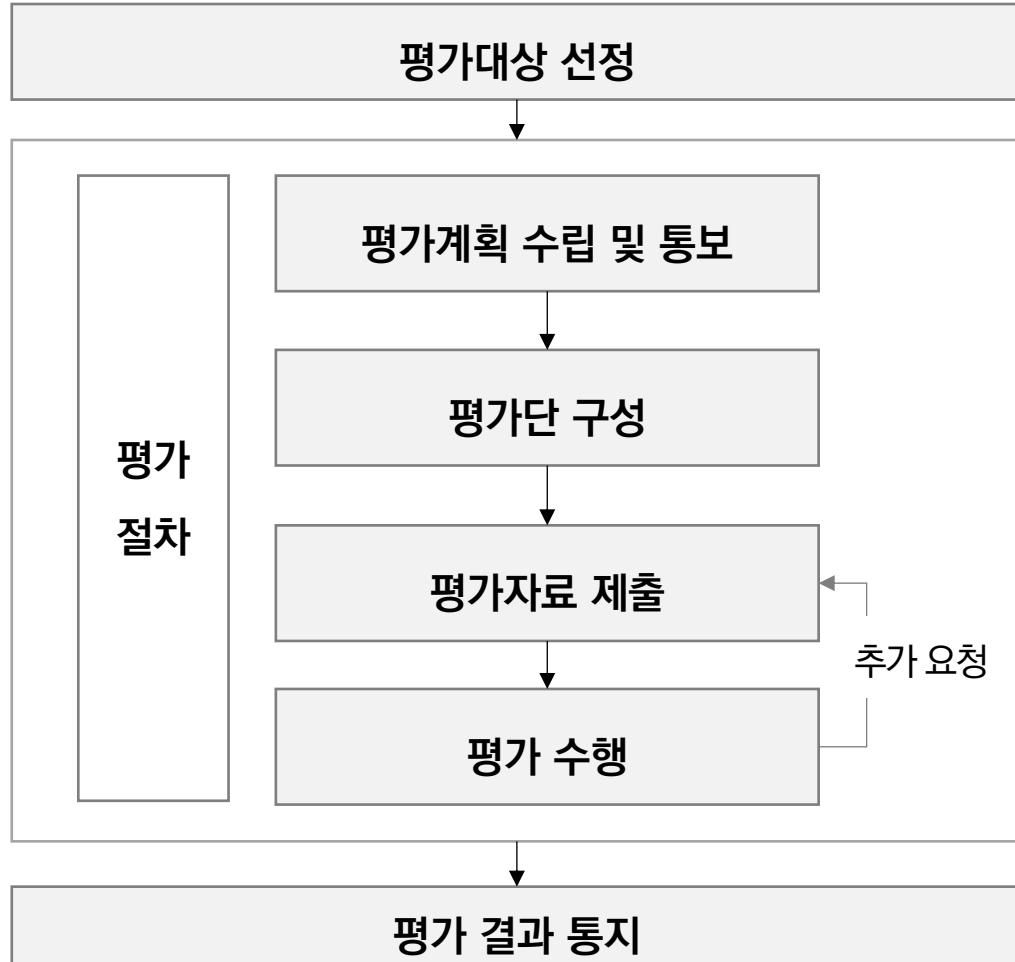


공공부문 주요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대책과 연계하여 향후 개인정보 수준진단 제도의 강화 예상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절차



▪ (시행령)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기준·방법·절차 등) 제1항 제1호~제3호

▪ (고시) 제5조(평가단 구성 및 운영)

[평가단 자격요건]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2. 개인정보 보호 또는 정보 보호·보안 분야에서 3년 이상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평가단 업무]

1. 평가 대상 제출자료에 대한 검증, 평가 및 적정성 여부 판단
2. 평가 대상 현장검증 및 자문
3. 평가 결과 평정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효율적 수행 및 개선을 위한 지원

▪ (고시) 제6조(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 등)

▪ (고시) 제7조(평가 결과의 활용 및 지원)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점검 및 시정조치 의결 사례('24년 2월)

대상 선정 및 과태료 부과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실태점검 대상 선정 : 미흡판정 기관



암호화 미조치, 접근통제 의무위반, 접속기록 관리 위반 사실 확인



과태료 부과

기관명	점검결과 위반항목	시정조치(안)
****로지스	안전조치 의무 위반(보호법 §29)	과태료 540만 원
*****지원재단	안전조치 의무 위반(보호법 §29)	과태료 450만 원
****안전관리원	안전조치 의무 위반(보호법 §29)	과태료 540만 원
****산업진흥원	안전조치 의무 위반(보호법 §29)	과태료 360만 원
****산업진흥원	안전조치 의무 위반(보호법 §29)	과태료 540만 원
****시설관리공단	안전조치 의무 위반(보호법 §29)	과태료 450만 원
****시설관리공단	주민등록번호 보관 위반(보호법 §24의2②)	과태료 360만 원
****시설관리공단	-	개선 권고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시행 : 24년 3월 15일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활동 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구성에 대한 법적 기반 강화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 규정 신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운영 신설, 시행령에 규정된 지정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예외조건과 자격요건이 시행령을 통해 명시(시행일로부터 2년간 준비기간 보장)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 및 협력체계 구축



조직 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확인 및 협의회 운영 현황 등에 대한 검토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시행령 제32조 제4항, [별표 1]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 요건(시행령 [별표 1])

-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2년 이상 필수로 보유하고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4년 이상의 경력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지정 개인정보처리자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제4항)

- 연간 매출액 또는 수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을 기준)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2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 책임자 기준(시행령 제32조)

1.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나.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마. 시도 및 시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바. 시군 및 자치구: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사. 제2조 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다만,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직원을 말한다.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시행령 제32조 제4항, [별표 1]

개인정보보호 경력 2년 이상을 필수로 보유하고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4년 이상의 경력(시행령 시행('24년 3월) 후 2년 내 요건 충족 필요)

구분		경력 인정 조건	인정 기간
시행령 [별표 1]	개인정보보호 경력	▪ 개인정보보호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	2년
		▪ 개인정보보호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1년
		▪ 개인정보보호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	6개월
	정보보호 경력	▪ 정보보호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	2년
		▪ 정보보호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1년
		▪ 정보보호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	6개월
	정보보호 기술 경력	▪ 정보기술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	2년
		▪ 정보기술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1년
		▪ 정보기술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	6개월
고시 [별표 1]	개인정보보호 경력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고시 제14조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1년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취득	
	정보보호, 정보기술 경력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 응용기술사	1년
		▪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기사	6개월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1/5)

※ 자동화된 결정이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을 의미하는 것

시행 : 24년 3월 15일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분야(인사채용, 복지수급자 선정 등)가 급증하는 가운데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가 증가하고 있음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의 적용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 요구 근거 마련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거부권 (단, 계약, 동의, 법률 등 정보주체가 알 수 있는 경우 제외)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 설명 등의 조치 필요
-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공개(ex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제44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 제44조의3(거부·설명 등 요구에 따른 조치), 제44조의4(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공공기관 업무 중 자동화된 결정(AI 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의 존재 여부와 알고리즘에 대한 분석 절차 마련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2/5)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판단 기준)

-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권리가 박탈되거나 권리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는지 여부
- 정보주체가 수인하기 어려운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지속적인 제한이 발생하는지 여부
- 해당 영향이 미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거나 해당 영향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의 거절 사유 : 정당한 사유(판단기준)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성립, 요건이 충족하는지 여부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인지 여부
-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의 재산 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3/5)

▶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의무(시행령 제44조의3)

- (자동화된 결정 거부 시) 해당 결정을 적용하지 않는 조치를 하고, 정보주체가 인적개입에 의한 재처리를 요구한 경우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알려야 함
- (설명 요구 시) ① 해당 결정의 결과, ② 해당결정에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 및 영향 등을 포함하여, 간결하고 의미있는 설명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
-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사전 공개한 기준과 절차 등을 활용하여 설명

조치사항

- 해당 자동화된 결정의 결과
- 해당 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 유형
- 개인정보의 유형이 자동화된 결정에 미친 영향 등 자동화된 결정의 주요 기준
- 해당 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의 처리과정 등 자동화된 결정이 이뤄지는 절차

- (의견제출 및 검토 요구 시) 정보주체가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 후 정보주체에 결과 통지
- (요구의 거절)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절 가능
- (조치 기간) 3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시 2회에 한정하여 각각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4/5)

▶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의 절차 공개(시행령 제44조의 4)

- 자동화된 결정이 이뤄진다는 사실과 그 목적 및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범위
 - ※ 정보주체 스스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인지 가능성 제공
- 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되는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과 자동화된 결정의 관계
 - ※ 현실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유형과 자동화된 결정의 관계를 공개
-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및 주요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절차
 - ※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의 고려사항과 절차의 투명성 강화
-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민감정보 또는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거부 또는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과 거부 요구방법과 절차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5/5)

▶ 자동화된 결정 자율진단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것인지?
(인적 개입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할 경우 Yes에 해당)

↓ YES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가?

↓ YES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한 최종적 결정인가?
(단계적 결정이라도 각 단계에서의 최종적이라면 'Yes'에 해당)

↓ YES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

조치
사항

홈페이지 등에 기준 절차 및 처리되는 방식 공개

정보주체가 설명요구시 간결하고 의미있는 설명 제공
또는 검토요구 시 반영 여부 결과 통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 YES

자동화된 결정이 동의, 법률, 계약에 근거한 경우가 아닌가?

↓ YES

조치사항

정보주체가 거부 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 후 결과 통보

(출처: 개인정보보호법 2차 시행 현장 설명회 자료)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 확대

시행 : 24년 3월 15일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의 배상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움
- 기존 의무대상 적용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준 적용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법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 시행령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 적용 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변경되면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의무대상의 확대되며, 일부 공공기관도 의무가입대상에 포함됨
- 공공기관 중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시 자격요건 의무대상 공공기관은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됨



각 기관이 손해배상의 보장 적용 예외 대상 또는 의무대상 여부의 확인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공공기관 기준) 손해배상의 보장 조항 적용 여부

의무 적용 제외

1. 공공기관 (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시 자격요건 의무대상 공공기관은 미포함)

(법 시행령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의무 적용 대상(공공기관 대상)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시 자격요건 의무대상 공공기관
- 시행령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시행령제32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적용대상에 포함됨

〈시행령 제32조 제4항 각 호〉

1. 연간 매출액 등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가.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2.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대학원 재학생 수를 포함한다)가 2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4. 공공시스템운영기관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시행 : 24년 3월 15일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조사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도 매 2년마다 동일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다른 조사 및 점검과의 중복 등 실효성 저하
- 조사 대상기관 · 조사 주기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의무 적용 공공기관 대상 조정(처리 규모의 적용)
- 정기적인 조사 기간의 조정
- 타 점검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한 점검 인정 기준 제시



수준평가 제도로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조사 예외 가능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조사 적용 완화

개정 前	개정 後
<p>②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공공기관2.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p>②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2. 보호위원회가 법 위반 이력 및 내용·정도,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3.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p>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2년마다 1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p>	<p>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3년마다 1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온라인 또는 서면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법 제11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은 경우2. 법 제32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5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점검이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준하는 것으로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도입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1/3)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일반적 권리로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신설
-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개인정보가 대량 수집·유통되고 있으나, 정보주체는 본인정보를 자기주도적으로 유통·활용하는데 한계
-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 전송요구권(이동권) 근거를 마련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분야별 추진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 정보주체가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① 본인에 관한 정보에 한 해, ②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③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전송을 요구할 권리 신설
-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① 정보주체 본인, ②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③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할 의무 부담

✓ 전송방법,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중단의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추후 시행령에서 명시(시행일자 미지정)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민원처리법 제10조의2, 공공데이터법 제17조 등 각 조항에 대한 업무요구사항의 이해 필요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참고자료] 전송요구권과 제3자 제공의 구분

구분	전송요구권	제3자 제공(법 제17조)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정보주체의 자발적 전송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타 법령(전자정부법, 민원처리법, 공공데이터법 등)에 의한 제공효율적인 행정서비스 등을 위한 정보 제공
전송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법적 근거에 따라 전송 및 수신 기관이 지정(공공기관)
수신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송(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정보단,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분석한 정보는 전송 대상에서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법적 근거에 따라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지정됨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도입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2/3)

시행 : 24년 3월 15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개인정보 전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업무의 규정
- 개인정보 전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정요건의 규정과 개인정보 관리전문기관의 금지행위 규정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는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 행사지원, 개인정보 전송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 개인정보의 관리·분석,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으로 개인정보 전송관리분석에 필요한 기술수준 및 전문성,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능력을 바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허가제)

✓ 전문기관의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명시

✓ 공공기관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전문기관의 설립 지정에 대한 모니터링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도입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3/3)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개인정보 전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업무의 규정
- 개인정보 전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정요건의 규정과 개인정보 관리전문기관의 금지행위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주요 개정 내용

신설

통합 및 삭제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활용내역 및 관리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이 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및 전송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 목록, ②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철회 내역, ③ 개인정보의 전송 이력 관리 등 지원 기능, 그 밖에 대통령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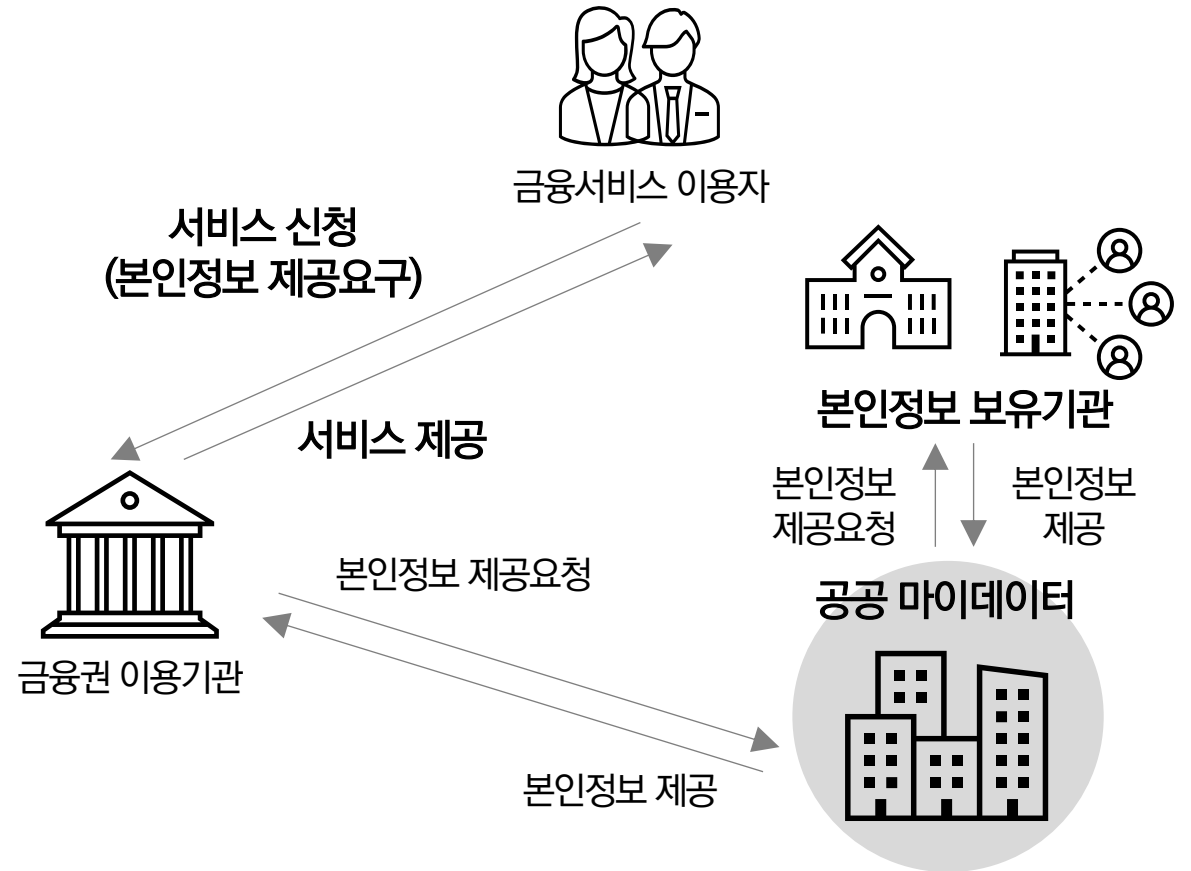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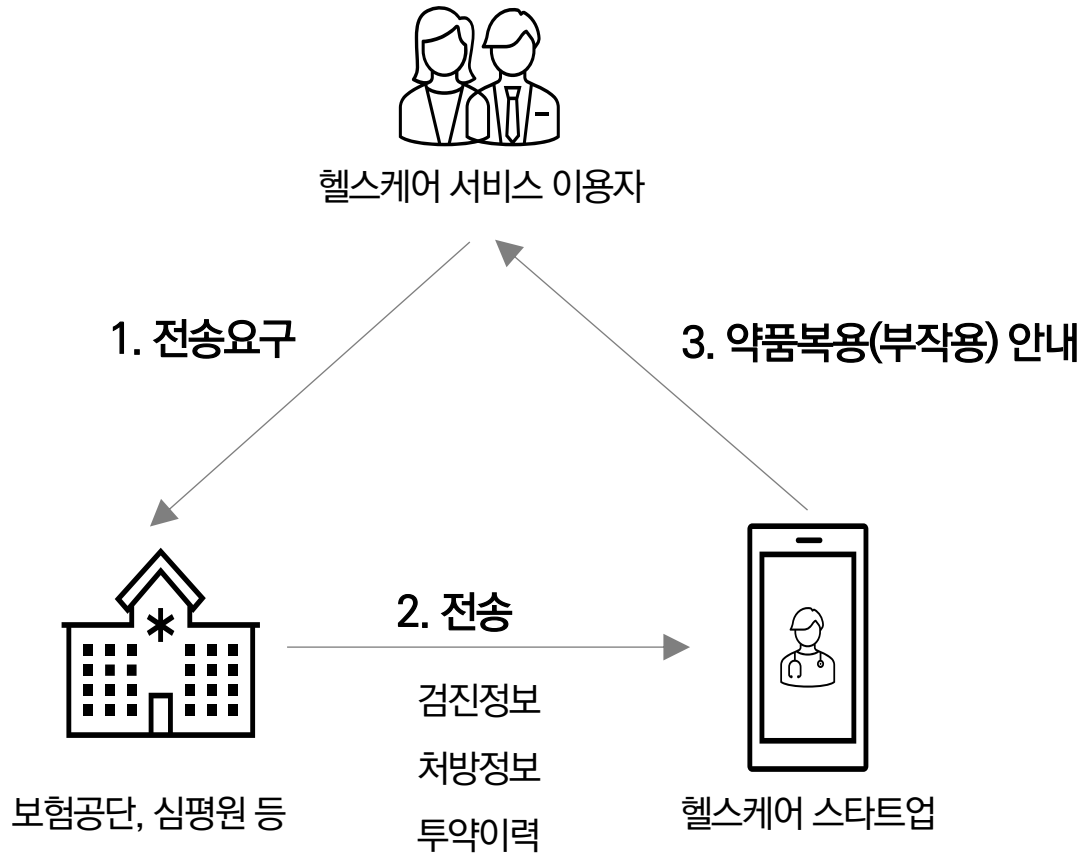
✓ 구축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명시

 공공기관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전문기관의 설립 지정에 대한 모니터링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참고자료] 산업분야별 마이데이터 서비스 예시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참고자료]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이해관계자별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정보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정보주체인 국민은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① 본인, ②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③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
보유기관 (개인정보처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① 정보주체 본인, ②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③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전송해야 할 의무 부담 ※ 매출액, 개인정보의 규모, 처리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
수신기관 (개인정보처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개인정보를 전송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동의를 통해 정보주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정부의 지정을 받아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 개인정보 전송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 개인정보의 관리·분석 등의 업무 수행
전송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모든 분야의 개인정보를 포괄하되 동의 또는 계약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함 ※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 제외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 및 완화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 및 완화(1/3)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복잡하고 경직적인 동의제도 운용으로 기업·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합리적인 개인정보 처리 및 활용에 제약
- 정보주체 또한 복잡한 고지사항과 절차 등으로 '동의의 형식화' 및 '동의 만능주의' 해소
- 시행령을 통해 동의받는 방법에 대한 글로벌 기준 반영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기업의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활성화(단, 개인정보처리자의 입증책임의 강화) 하고,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동의제도 개선
 - ① 필수 동의 강제 관행 개선
 - ② 코로나 19 상황 안전조치 강화
 - ③ 국민 생명보호 관련 개선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시 입증책임에 대비한 법률 또는 법령에 의한 근거 조항 정비와 그로 인한 동의 불필요 사항의 분류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 및 완화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 및 완화(2/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처리근거 완화에 따른 변화 가능성

- 형식적으로 사전적인 필수 동의에 대한 과도한 동의 획득 절차 완화
- 제17조 제1항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정보주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정보주체 동의에 기반하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활성화 가능
 - 제17조 제1항 2호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과 연계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촉진 기대
 -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여부
- 사전 동의 및 구분 동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재고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 및 완화

🔒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 및 완화(3/3)

▶ 개인정보 처리 요건 정비

구분	주요 개정 사항
필수 동의 강제 관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필수 동의(제39조의3)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규정(제15조)으로 통합계약 체결·이행에 필요한 경우 요건을 정비(‘불가피하게’ 삭제)하고, 동의 없는 수집·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
코로나 19 상황 안전조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개인정보 처리요건에 ‘공중위생,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집·이용 요건을 추가하여, 코로나19 등 공중위생 목적인 경우에도 안전조치,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제1호, 제3호 삭제 후 수집 이용 요건에 추가
국민 생명보호 관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개인정보 처리요건 중 긴급상황 요건에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요건을 삭제하여, 국민의 생명 등 보호를 위해 급박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

▶ 분리동의 대상(법 제22조(동의받는 방법))

- **동의 받는 방법 규정 정비** : 구분하여 각각 동의받아야 하는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열거
- **법적 근거에 따른 개인정보의 구분** :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동의받은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 **동의 획득 시 구분하여 동의받아야 하는 경우**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시
 - ✓ (목적 내) 제3자 제공 시 또는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시
 - ✓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 · 제공 시
 -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시
 - ✓ 홍보 마케팅 시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 및 완화

[참고자료]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없는 경우 예시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인터넷 쇼핑몰이 고객으로부터 구매상품 주문을 받아 결제-배송-AS 등 계약 이행을 위해 주소, 연락처, 결제정보 등을 수집하여 이용하는 경우
- 판매한 상품에 대한 AS 상담을 위해 전화한 고객의 성명, 연락처, 상품정보 등을 수집하여 이용하는 경우
- 회의 참석 전문가 등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이름, 계좌정보, 연락처 등을 수집하여 수당 지급에 이용하는 경우
- 백화점에서 상품구매 및 배송서비스를 위해 결제정보(카드정보 등)와 배송정보(주소, 연락처) 등 계약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개인정보 외에 오배송 등 방지를 위해 이름, 이메일, 집전화번호, 배송희망시간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배송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입주자와 아파트 관리서비스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세대주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 등 불가피하게 필요한 개인정보 외에 아파트 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거주자수, 반려견 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 및 완화

[참고자료]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없는 경우 예시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인터넷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가입을 요청한 정보주체와의 이용계약 체결을 위해 이름, 연락처, 생성아이디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 중개 계약 체결을 위해 부동산 소유자, 권리관계 등을 미리 조사·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보험회사가 계약체결을 위해 청약자의 자동차사고 이력, 다른 유사보험의 가입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회사가 취업지원자와 근로계약 체결 전에 지원자의 이력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 및 완화

[참고자료]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없는 경우 예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렌터카 서비스 사업자가 아동 대상 범죄가 예상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구조를 위해 렌터카 서비스 이용자인 범죄자의 주소 등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
- 재난, 실종 등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구조를 위해 CCTV 영상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관계기관에 해당 정보를 우선하여 제공하는 경우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으나, 그 외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의 의무는 모두 적용됨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 및 완화

[참고자료] 추가적인 이용·제공 예시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정보주체가 택시 중개서비스 앱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택시 중개서비스 앱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택시 호출을 위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택시기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 인터넷 쇼핑몰(오픈마켓) 사업자가 상품 중개서비스 계약 이행을 위해 수집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해당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하고 있는 제3자인 상품 판매자에게 배송 등 계약 이행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통신판매중개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입점 사업자와 고객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통해 플랫폼 이용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주문내역, 결제 내역 등의 개인정보를 거래 확인 및 배송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입점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가 소액결제 등 휴대전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 중인 정보주체의 가입자식별정보, 결제일시·결제금액 등 결제내역정보를 결제 목적으로 이동통신사에 제공하는 경우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 및 완화

[참고자료] 추가적인 이용·제공 예시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경우

- 화장품을 판매한 소매점이 소비자(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연락처 정보를 화장품 제조회사가 실시하는 소비자 보호 목적의 리콜 실시를 위해 화장품 제조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고객이 가게에서 계산한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고객이 실수로 그 물건을 가져간 경우 가게주인이 물건을 가져간 고객에게 연락하여 물건반환을 요청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
- 회사가 근로자의 경력증명을 위하여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력증명서 발급기간이 경과한 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개인정보파일 등록 예외 대상 개정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개인정보파일 등록 예외조항에 대한 불분명함이 존재함
- 개인정보파일로 등록되지 않은 보호대상에 대한 관리 소홀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시행령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 및 기준·방법·절차 등) 신설

- 인사기록파일, 비상연락망, 통계법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파일 등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이 새롭게 등록대상
- 개인정보파일 예외 대상 중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을 삭제하고, “1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개정
-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공개에 대해 “의무적 공개(~하여야 한다)”에서 “권고(~할 수 있다)”로 개정

✓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대상 확대(내부 임직원의 개인정보)와 추가적인 보호 활동의 범위 강화가 예상됨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참고자료] 개인정보파일 등록 예외 대상 개정 관련 시행령 개정

▶ 법 시행령 제3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등)

개인정보파일 등록 예외 대상

1. 회의참석 수당지급, 자료·물품·금전의 정산·송부 또는 자문기구 운영 등 일회적 행사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파일
2.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3. 그 밖에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을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파일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참고자료] 개인정보파일 관련 조항에 따른 Q&A

개인정보파일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개인정보파일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개인정보파일과 ERP

- 전국 단일의 공통업무와 관련 개인정보파일은 중앙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을 등록·관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등은 중앙행정기관이 제공하는 '개인정보 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등록
- 다만,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은 일종의 등록 예시이므로, 표준목록을 따로 제공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에서는 업무별로 개인정보 파일을 각각 등록하여야 함

통계법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2023.3.14. 공포)되면서 보호법의 미적용 대상에서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음. 따라서 그동안 「통계법」에 따라 수집'된다는 이유로 등록하지 않았던 개인정보파일을 등록·관리하여야 함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업무위탁과 재위탁에 대한 관리감독의 규정 명확화(1/2)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발생 시 재위탁업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수탁자와 재위탁자에 범위와 법적 적용사항이 불명확함
- 재위탁 사항에 대한 위탁자의 책임 강화 필요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위탁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수탁자 뿐만 아니라, 재위탁 받은 수탁자까지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에 공개
- 수탁자의 범위를 재위탁받은 수탁자까지 포함하고 수탁사의 법 준용 범위를 확대 규정함(해당 법 조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 = 수탁자"로 명확히 규정)
- 수탁자가 재위탁시 위탁자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규정

✓ 종전에는 수탁자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더라도 과징금·과태료·형벌 적용 규정이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수탁자의 경우에도 법 위반에 대한 책임 있는 범위에서 과징금·과태료·형벌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



개인정보처리위탁 대상의 확대, 수탁사의 법적 준수요건의 확대, 위탁사의 수탁사 관리감독 요구 강화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업무위탁과 재위탁에 대한 관리감독의 규정 명확화(2/2)

▶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7항 개정사항

현행	개정안
<p>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p>	<p>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및 제63조의2를 준용한다.</p> <p>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로 본다.</p>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개인정보의 사적 목적 이용 금지 및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감독 강화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사적이용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어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도 처벌 곤란
- 개인정보의 불법 사적 이용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수사 및 형상처벌 대상이나 **기존 법에는 명확한 처벌 근거 부족**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제59조(금지행위),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제59조제3호 금지행위 규정에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추가
 - ↳ (개정)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 제28조제1항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지정 시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개정



공공부문 주요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대책과 연계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범위 정비 및 관리감독 기능의 강화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강화 및 사전 실태점검 강화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자료제출요구권과 사전 보호활동 권한 강화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높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한 보호위원회의 보호 활동 권한 강화

✓ 자료제출 요구, 검사절차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명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예방 차원의 활동에 관한 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참고자료]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강화 및 사전 실태점검 강화 관련 시행령 개정

현행	개정안
<p>①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를 말한다.</p> <p>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제4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검사권한을 수행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검사 대상 및 사유를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보호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해당 공무원이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사 일정, 검사 범위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p> <p>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계획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검사 기간은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받거나 처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p> <p>⑦ 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제7항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건의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대응을 요청할 수 있다.</p>	<p>①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를 말한다.</p> <p>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는 중요 법적 안내사항임
- 개인정보처리방침 상 고지내용 추가와 적절하지 않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평가와 개선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 법 제30조의2을 통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평가 및 개선 권고 규정(평가 기준 : 법적 요구사항 반영 여부,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공개 방법의 적절성으로 구성)

✓ 보다 자세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참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UI, UX 변경 방안 마련하고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와의 업무 연계 필요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 [참고자료] '24년 6월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 세부 항목

'24년 평가 대상 - 49개 사

- ① 빅테크, ② 온라인 쇼핑(종합 쇼핑몰, 온·오프라인 병행, 홈쇼핑, 중고거래),
- ③ 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④ 병·의료원, 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⑥ 엔터테인먼트(게임·웹툰), ⑦ AI 채용

'24년 평가 기준 - 26개 항목, 42개 지표, 63개 세부지표(정성과 정량 평가 혼용)

- 적정성 : 3개 분야
 - 적합성 : 8개 항목, 12개 지표, 23개 세부지표
 - 권리보장 : 5개 항목, 9개 지표, 11개 세부지표
 - 안전성 : 6개 항목, 10개 지표, 13개 세부지표
- 가독성 : 4개 항목 7개 지표, 9개 세부지표
- 접근성 : 3개 항목, 4개 지표, 7개 세부지표
- 기타 고려사항 : 감점요소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는가?		
①-1.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모호한 표현 없이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는가?	정성	하는 내용을 누락없이 기재하고 있으며, 정보주체가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는가? 는 자 제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가 제공받는 자, 제자의 이용 목적, 제공받는 개인정보 항목
①-2.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고지하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누락없이 기재하고 있는가?	정량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는가?		정량
①-1.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와 항목을 모호한 표현 없이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는가?	정성	에게 동의 받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인정보 처리 항목을 누락 없이 모두 기재하고 있는가? 항목과 보유·이용기간을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및 하고 있는가?
①-2.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법적 근거를 동의문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는가?	정량	
②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가?		정량
②-1.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가?	정량	법적 근거 및 제공 목적에 비추어 개인정보 제공 !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가? 법적 근거 및 제공 목적에 비추어 개인정보 보유 ! 안내하고 있는가?
②-2.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고지하는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도록 누락 없이 기재하고 있는가?	정량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을 적정하게 정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는가?		
①-1.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을 처리 목적에 비추어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가?	정량	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 이용·받는 자, 항목, 이용·제공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을 정량 는가?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 고려사항에 ! 있는 사항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①-2.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을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고지하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누락없이 기재하고 있는가?	정량	
①-3.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 보존 근거와 보존하는 항목, 보유기간을 모호한 표현 없이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는가?	정성	
4. 파기절차 및 방법		
①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을 적정하게 정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는가?		
①-1.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을 누락없이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는가?	정량	!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는가? !항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누락없이 기재하고 !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는가? 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는가? · 수탁자가 재위탁한 업체명, 재위탁 업무 내용 등 누락없이 기재하고 있으며, 정보주체가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①-2.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기재하고 있는가?	정량	
5.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해당시		
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는가?		
①-2. 국외 이전 시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없이 기재하고 있으며, 정보주체가 관련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는가? * 국외이전의 법적 근거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이전		정성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참고자료] 개인정보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관련 시행령 개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기준(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 고시)

- ① 전년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면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일 것
- ②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5만명 이상일 것
- ③ 처리방침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법적 근거를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고 있지 않을 것
- ④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포함)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그 밖에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 방식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을 것
- ⑤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등이 2회 이상 되었거나, 보호위로부터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것
- ⑥ 19세 미만 아동 또는 청소년을 주된 이용자로 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운영할 것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기준

1. **내용의 적정성** 개인정보 처리 근거,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 법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2. **이해의 용이성**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정보주체가 이해하기 쉽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특히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3. **접근성**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하여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참고자료]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기준 중 고시 위임사항

- ①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복잡성, 정보주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기호, 도표, 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정보주체가 이해하기 쉽게 수립하였는지,
-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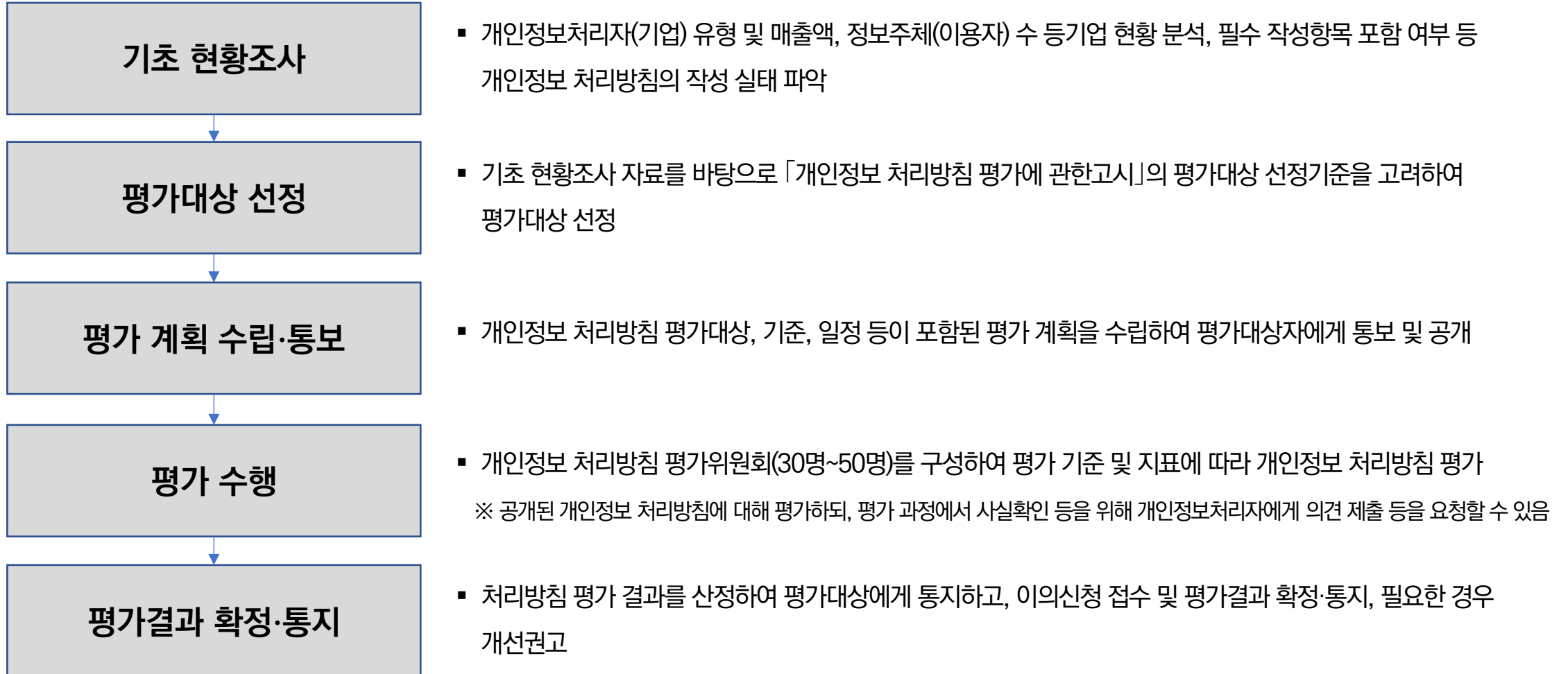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기준 중 고시 위임사항

- 보호위원회는 평가 대상, 기준, 절차 및 일정 등을 정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실시 30일 전까지 평가 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홈페이지 등에 평가계획을 공개할 수 있음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참고자료]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 절차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 [참고자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24년 4월 개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재 사항	
구분	기재사항
1	제목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권장 해당시
5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6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해당시
8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 해당시
9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시
10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 해당시
1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2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해당시
13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해당시
14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해당시
15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해 제3자가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수집·이용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권장 해당시
1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18	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 해당시
19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권장
20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해당시
2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해당시
22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한 사항 권장
2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참고사례(『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2022.7., 34쪽)

참고 사례 아동용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사례

1. 수집하는 개인정보

대부분의 네이버 서비스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일, 캘린더, 카페,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 가입을 하는 경우, 네이버는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회원가입을 할때

이용자를 확인하고, 아이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아직 14세가 되지 않은 이용자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부모님 등 보호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리인, 즉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호자 정보도 함께 수집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선택] 이메일 주소, 프로필 정보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자극적이고 과잉된 대화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부모님, 자녀님, 선생님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극적이고 과잉된 대화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외에 아동·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친숙한 방식으로 작성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음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에 대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특례 신설

시행 : 24년 9월 15일

시행령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민간 수범자의 경우) 일반규정(종전 영 제30조)과 특례규정(종전 영 제48의2)으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안전조치 규정 통합
- (공공기관) 주요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별 공공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관련 특례 조항 신설
- 안전조치 분야에서의 기술발전의 가능성을 제약하지 않도록 기술중립성 원칙을 반영

시행령 주요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시행령 제30조의2(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에 대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특례)

-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공공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조치 요구사항(내부관리계획, 접근권한, 접속기록) 신설
- 공공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의 범위를 초과한 접근 시 정보주체에게 통지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운영하거나 전담인력 배치
- 공공시스템 각각에 대하여 해당 공공시스템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
- 공공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된 공공시스템 협의회를 설치·운영



안전성 확보조치,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에 대한 특례 등 고시 개정안 적용,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기관 내 적용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조항 개정 및 신설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드론 등 다양한 형태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 증가
-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로봇 등 다가오는 모빌리티 시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이동형 기기 운영 기준 및 법적 근거 마련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예외 규정의 추가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시 Opt-In의 기초**
 - ↳ 드론, 자율주행차 등에 촬영된 정보주체는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경우 사후 대응 관점으로 개정안을 마련함
- 이를 위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표시방법(불빛, 소리, 안내판) 등 촬영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
-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않을 경우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능



경찰, 소방 등 공공기관의 업무 목적 상 사용하는 바디캠 등에 대해 업무 활용 시 운영 기준 마련 및 적용 필요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

🔒 [참고자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조항 개정 및 신설 관련 시행령 개정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 예외

- 제27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의 예외) 법 제2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범죄, 재난,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방법

-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을 통해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 다만, 드론에 의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제한의 예외

1. 출입자 수 등 통계값 산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성별, 연령대 등 통계적 특성 값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가이드라인 개정(24년 1월)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만14세 미만 아동의 권리 보장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권리를 다루는 법 조항이 부재한 반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 필요성 대두됨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와 확인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
(법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를 제22조의2로 신설)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신설을 통해 아동의 권리보장 조항 신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고지 시에는 아동이 해당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규정



정부 정책적용 대상이 만 14세 미만 아동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와 고지사항의 적절성 등에 대해 재검토 필요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선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는 중요 법적 안내사항
- 법 개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제28조의2, 제28조의3에 관한 가명정보의 처리, 결합제한 등)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 상 고지내용 추가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 처리 시 법 제30조 3의3을 통해 공개 가능성과 비공개를 선택하도록 규정(해당 시)
- 법 제28조의2, 제28조의3의 가명정보의 처리와 결합제한에 관한 사항을 처리방침에 고지하도록 규정(해당 시)

관련 사례

지도앱 서비스 이용자가 스스로 정보를 입력하여 저장한 폴더가 기본설정이 공개로 되어 있는 사실을 모른 채 성생활, 건강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여 인터넷에 공개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와 연계하여 처리방침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 필요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통지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동일 행위 동일 규범의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 제공 내역 대상의 확대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를 '통지'로 개정
-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 통지 의무 적용 이해관계자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사업자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통지대상을 이용자에서 정보주체로 확대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통지를 이용·제공 내역 통지로 같음할 수 있도록 하고,
- 이용·제공 내역 예외 조건을 신설함



이용·제공 내역 통지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여부 확인 필요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과 정보주체로부터의 수집에 따른 통지 비교

구분	법 제20조, 시행령 제15조의2	법 제20조의2, 시행령 제15조의3
통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법 제17조제1항1호에 따라 정보주체가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하여 저장·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통지항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이나 이용·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
통의 의무 개인정보처리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 + 정보주체의 요구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령)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자 (시행령)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p>(시행령)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하여 저장·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하며, 저장·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자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통지방식 및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법) 서면·전자우편·전화·문자전송·알림창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시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 and 정보주체의 요구 즉시 또는 (시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법) 서면·전자우편·전화·문자전송·알림창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시기) 연 1회 이상
통지의 예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공공기관) (법)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p>(시행령)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법 제20조의2에 따라 통지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령) 정보주체가 통지에 대한 거부사를 표시한 경우 (시행령)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집출처 등 통지를 통해 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한 경우 (시행령)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임직원 또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임직원(업무수행을 위해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인 경우 (시행령)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는 경우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온·오프라인 규제의 일원화

온·오프라인 규제의 일원화(정보통신서비스 특례규정 정비)(1/2)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데이터 3법 개정 시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특례규정(제6장)으로 단순 이전·병합
- 온·오프라인 서비스 경계가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규제(일반규정)와 온라인 규제(특례규정)의 이원화로 기업의 법 적용 혼선 및 이중부담 발생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등

- 정보통신서비스 특례규정을 일반규정과 일원화하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동일한 규범 적용
 - ① (중복 규정 통합) 일반규정과 유사·중복되는 특례규정은 일반규정으로 통합·정비하여 온·오프라인 사업자 간 상이한 규정 단일화
 - ② (특례적용 확대) 특례에만 있는 손해배상 보장, 국내대리인 지정, 이용내역 통지 등은 일반규정으로 전환하여 확대 적용
 - ③ (불필요한 특례 삭제) 유효기간(1년) 경과 시 파기 또는 별도 보관 의무 삭제, 방송사업자 준용 규정 등 불필요한 특례규정 삭제



일원화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된 조항의 검토 및 반영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온·오프라인 규제의 일원화

온·오프라인 규제의 일원화(정보통신서비스 특례규정 정비)(2/2)

특례규정 개정 현황과 공공기관 검토사항

특례 규정	개정내용	공공기관 담당자 추가 검토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제39조의3 ①②③)	제15조 · 제16조 일반규정에 통합	-
만14세 미만 아동 정보 수집(제39조의3 ④⑤⑥)	제22조의2 · 제5조제3항 신설하여 적용 확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추가 적용 검토
유출 통지·신고제도(제39조의4)	제34조 일반규정에 통합	-
보호조치에 대한 특례(제39조의5)	제28조 일반규정에 통합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에 대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추가 검토
유효기간제(제39조의6)	삭제 (이용자와 기업의 불편 해소)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60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의 개정여부 확인
동의철회권 규정(제39조의7)	제37조 일반규정에 통합	-
이용내역 통지제(제39조의8)	제20조의2 신설하여 적용 확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추가 적용 대상 여부 확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39조의9)	제39조의3 신설하여 적용 확대·	-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제39조의10)	제34조의2 신설하여 적용 확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추가 적용 검토
국내대리인 지정(제39조의11)	제31조의2 신설하여 적용 확대	-
국외이전 · 상호주의(제39조의12 · 13)	제28조의8~제28조의11까지 신설하여 적용 확대	-
방송사업자등 특례(제39조의14)	삭제(방송사업자등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포섭 가능)	-
과징금 특례(제39조의15)	제64조의2 신설하여 적용 확대	-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가명정보 처리 개선

가명정보 처리 제도 개선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가명정보의 보유기간 미지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 존재
- 가명정보의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조항 개선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 가명정보도 파기의무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 처리 시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처리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가명정보의 파기 기간에 대한 사항 파기와 파기 기록의 보관요구사항을 명확히 규정



가명정보 처리 시 목적에 따른 적절한 보유기간을 산정하고 보유기간 도래 시 파기 기록의 관리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가명정보 처리 개선

[참고자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정)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과 비정형 데이터

- 이미지, 영상, 음성, 텍스트 등 비정형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
- 기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정형데이터에 대한 처리 기준만 제시
-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연구기관 등에 적합한 처리 기준 제시 필요

▶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정형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정의) 정해진 규칙에 맞게 구조화된형식으로 존재하는 데이터	(정의) 일정한 규격이나 정해진 형태가 없이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
(예시) DB에 열과 행으로 저장된 테이블 형태의 자료 등	(예시) 사진이미지, 비디오, 통화음성, 채팅상담기록, 의료 영상기록 등
(특징) 데이터 연산, 분석 등 데이터 처리방식, 가명처리 기술·방법이 비교적 단순	(특징) 연구목적·환경에 따라 데이터 처리방식 및 가명처리 기술·방법이 복잡·다양

개정 : 24년 2월

발간등록번호
11-1790365-000029-01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참고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1. 개요
2.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활용의 특수성 및 고려사항
3.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본원칙
4.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단계별 고려사항

2024. 2.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일반규정과 특례규정의 유출 통지·신고 규정이 달라 온·오프라인 여부에 따라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른 요건을 적용하여 현장에서의 혼란 야기
- 일반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각각 다른 방식으로 유출 통지·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 발생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개인정보 유출 통지의** 경우 시행령 제39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기준 일원화
(단,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해소 후 통지가 가능하도록 보완)
- **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경우 시행령 제40조에서 ①1천명 이상 유출되었거나, ②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가 1건 이상 유출 또는 ③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
(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 해소 후 신고 가능)
- (예외) 유출 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음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매뉴얼 개선 필요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 국외 이전

개인정보 국외이전 조항 정비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국경 없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위해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필요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제28조의10(상호주의), 제28조의11(준용규정)

- 해외 법제와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해 동의 이외의 국외 이전 요건을 다양화하고, 중지명령권을 신설하여 보호조치 강화
- (요건 다양화) 국외이전 요건을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보장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화
- (중지 명령권 신설) 법 위반 또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등이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아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 신설

국외이전 요건

- 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② 법률 또는 조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③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을 위하여 법정고지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경우, ④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개인정보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⑤ 이전되는 국가·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호수준과 동등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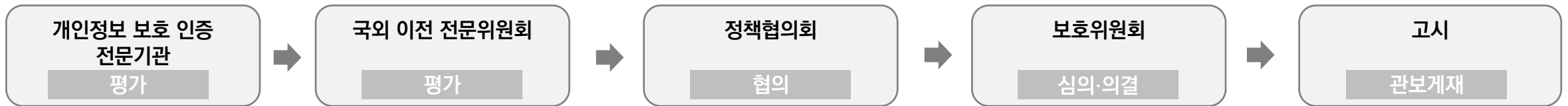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 국외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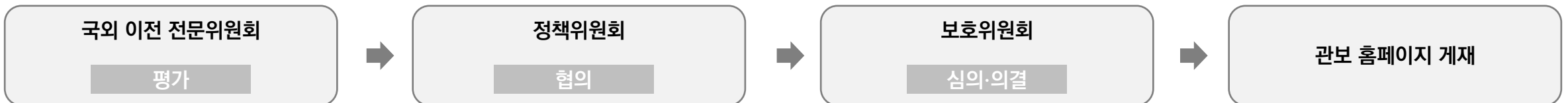
🔒 [참고자료] 국외 이전 법 개정 전후 비교 및 운영 절차

구분		법 개정 전	법 개정 후
개인정보 국외 이전	대상	개인정보처리자 (법 제17조③)	▪ 개인정보처리자(법 제28조의8) (온·오프라인 통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이전* 시 정보주체의 동의 ▪ * 제공(조회 포함)·처리위탁·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이전* 시 정보주체의 동의 ▪ * 제공(조회 포함)·처리위탁·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위탁·보관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시 동의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해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인증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보호수준을 보호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인증 절차]



[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 절차]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분쟁조정 제도 강화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강화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개인정보 권리침해 시, 소송에 앞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침해중지, 손해배상 등)하는 분쟁조정제도 운영
- 조정신청 시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에 한하며, 분쟁조정위에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권이 없어 적극적 조정에 한계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제43조(조정 신청 등), 제45조(자료의 요청 등), 제47조(분쟁의 조정), 제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

- 분쟁조정 요청 시,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 분쟁조정 관련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출입 및 자료조사 등 사실조사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
- 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을 경우 ‘거부’로 간주하던 것에서 ‘수락’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기준 전환
-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는 권한 신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자료요청권, 개선의견 통보 등)의 지속적인 강화 예정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과징금 규정 정비

과징금 규정 정비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경미한 위반사항까지도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업무담당자의 과중한 부담 및 업무회피 초래
- 과징금의 경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한액을 정하고 있어 글로벌 입법 추세에 맞춘 실효성 제고 방안 필요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 과징금 대상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과징금 상한액 기준을 '위반행위 관련'에서 '전체 매출액' 3% 이하로 변경
- 다만, 과징금 산정 시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효과성이 확보되도록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

현행	과징금 부과 기준(기존)
가명정보 처리(제28조의6)	전체 매출액 3% 이하 매출액 없는 경우 4억원 or 자본금 3% 중 큰 금액 이하
주민번호 유출(제34조의2)	5억원 이하
망법 특례(제39조의15)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 이하 매출액 없거나 산정 곤란 시 4억원 이하



개정

- 과징금 규정 통합정비(제64조의2 신설)
- 상한액 '전체 매출액 3% 이하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업으로 인한 매출액이 없거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매출액이 없거나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명시 (제60조의2 제2항 1호, 3호)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과징금 규정 정비

[참고자료] 과징금 기준금액 산정

▶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 중대성	부과 기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1% 이상 2.7%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5% 이상 2.1% 미만
보통 위반행위	0.9% 이상 1.5% 미만
약한 위반행위	0.03% 이상 0.9% 미만

▶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 중대성	부과 기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7억원 이상 18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원 이상 7억원 미만
보통 위반행위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3 법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참고사항

'20년과 '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공공기관

구분	의무가 강화된 주요 조항	의무가 완화된 주요 조항
2020년 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의 법적근거, 목적 및 범위 등 공개의무 (제18조 제4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준 강화 (제25조 제8항) ▪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의무(제32조)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의무(제33조) ▪ 개인정보열람 요구권 행사 편의를 위한 별도의 단일창구 마련(제35조 제1항) ▪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응할 의무(제43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사유 확대 (제15조 제1항 제3호)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사유의 확대(제18조 제2항 단서) ▪ 개인정보처리방침 제정·공개 의무 완화(제30조제1항) ▪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제한·거절 사유 확대(제35조 제4항 제3호) ▪ 개인정보처리 정지요구 대상 개인정보의 범위 제한(제37조 제1항 단서) ▪ 개인정보처리정지요구권 거절 사유 확대(제37조 제2항)
2023년 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로 데이터 전송 확대 ▪ 정보주체 권리보장 강화(자동화된 의사결정과 정보주체 권리신설, 아동의 권리 신설) ▪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보호 수준평가 강화,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대상 확대 ▪ 개인정보처리방침 고지 및 관리 강화(처리방침 평가 및 개선 제도 신설) ▪ 업무위탁에 따른 처리제한 공개 및 관리 강화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신설 및 강화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로 인한 업무 확대(이용내역 통지,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 등) ▪ 보호위원회 권한 강화로 인한 자료제출 및 사전실태점검 사례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처리 규제 완화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3 법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참고사항

🔒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가이드라인 현황(개인정보보호포털, 2020년 이후 발간 자료)

No	가이드라인명	발행시기	No	가이드라인명	발행시기
1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초안)	2023.12	9	합성데이터 생성 참조모델	2024.05
2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2차 개정사항 안내서	2024.03	10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일부 개정)	2024.04
3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지침	2024.04	11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대응 매뉴얼	2023.09
4	가명정보처리가이드라인	2024.02	12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 편)	2022.12
5	공공·민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024.01	13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2022.07
6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2024.04	14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2021.09
7	인공지능 개발 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2024.07	15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2020.12
8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	2024.06	16	법령해석 심의·의결 안건 결정문	2022.05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3 법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참고사항

공공기관 업무 시 적용 주요법령 현황

No	분야	법령	주요내용	소관기관
1	공통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 처리 시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감사	감사원법	감사원의 조직, 직무범위, 감사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 등을 규정	감사원
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 등을 규정	
4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장의 자격, 자체감사 종류 및 감사 절차 등을 규정	
5		감사원 감사사무처리규칙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6	공직선거	공직선거법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행하여 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		공직선거관리규칙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8	수사	형사소송법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 제기, 재판 등의 형사절차를 규율	법무부
9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	법무부
1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경찰청
11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법무부
1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	경찰청
13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국무조정실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3 법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참고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법령 체계

구분	법령	시행일자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2024. 3. 15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024. 3. 15
행정규칙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2024. 1. 30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3. 10. 16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2023. 9. 15.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	2024. 3. 15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2023. 10. 16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2023. 10. 16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2024. 2. 2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2023. 9. 2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2023. 10.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인정에 관한 고시	2024. 4. 2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2024. 1. 4
	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참고자료

[개정안 및 보도자료]

-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개정안 보도자료, 2023년, 3월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2차 시행 현장 설명회 자료

[웨бина 동영상 자료]

- [G-PRIVACY 2023 웨비나] 이병남 개인정보위 과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데일리시큐, 2023년 4월
- [법무법인 광장 웨비나]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변화와 대응, 고환경 변호사, 채성희 변호사, 손경민 변호사 등, 2023년 3월

[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 주요 내용 살펴보기, 손도일, 안다연, 허승진(법무법인 율촌), 2023년, 3월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법무법인 세종, 2023년 3월(<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039>)